

『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이용율이 낮은 일부 법정공휴일을 휴장일로 지정하고
- 초과사용시간 및 사용인원을 규정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레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캠핑장 개장일 변경(안 제4조)
 - 당초 : 연중무휴 → 변경 : 연중무휴(설날 당일, 추석 당일 휴무)
- 초과사용시간 규정(안 제5조)
 - 당초 : 퇴실시간 초과 후,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
 - 변경 : 퇴실시간 초과 후, 3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
- 사용인원 규정(안 제5조)
 - 당초 : 카라반(6인), 평상(8인)
 - 변경 : 카라반(6인), 오토캠핑(8인), 일반캠핑(6인), 평상(8인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
「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법정공휴일을 휴장일로 지정하고 초과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와 한부모가족이 제외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